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호	708
-----------	-----

2019. 6. 19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1. 제안경위

- 2019. 5. 24.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2019. 5. 30 회부)

## 2. 제안이유

입주기업 지원 등 마곡산업단지 육성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광장의 부속시설물인 상가, 주차장, 자전거보관소는 각각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함(안 제3조)
- 나. 시장은 광장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마곡일반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4조)
- 다.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시장은 사용 목적과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허

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음(안 제6조제1항)

마.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일 순서로 허가하고, 신청일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 목적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며, 사용 목적이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가함(안 제6조제2항)

바.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되,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안 제7조)

사. 불허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안 제8조)

아. 시장은 사용허가 이후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허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안 제9조)

자. 사용자가 신청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10조)

차.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고, 사용일이 지난 후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안 제11조)

카. 혁신기술 시범사업을 위해 광장을 사용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 4. 검토의견

### □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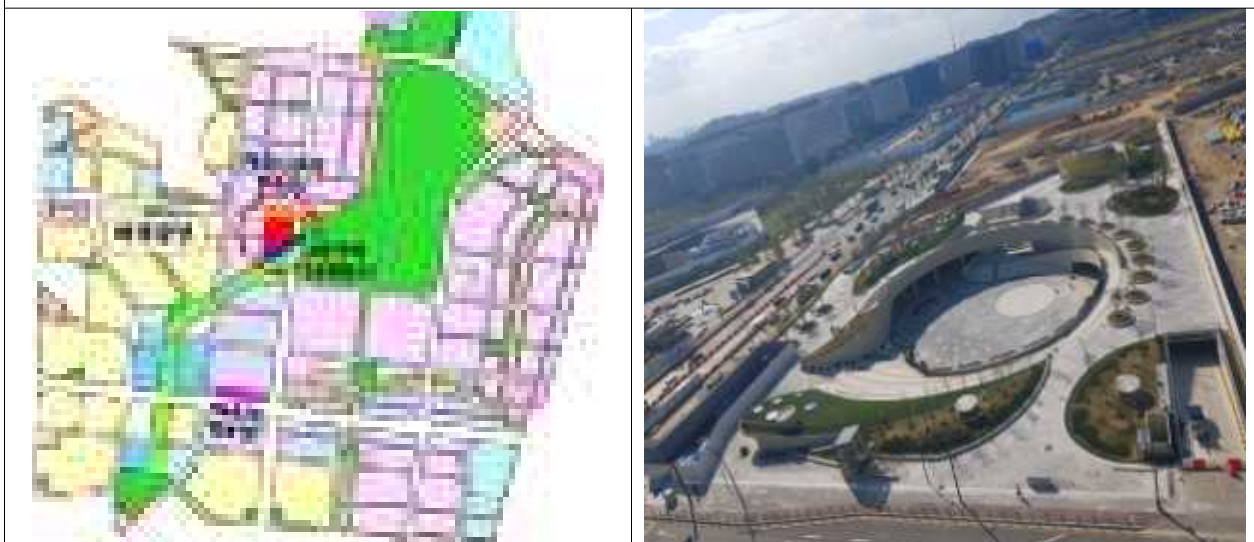
- 이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개장한 마곡산업단지 내 지하주차장, 상가, 자전거보관소의 부속시설이 있는 마곡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마곡광장은 9호선 마곡나루역과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사이에 위치하여, 지하철과 지하보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가,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 해당 구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부속시설물을 포함하여 규모는 12,979㎡로서, 지하·지상을 통합하는 썬큰형 광장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 마곡광장 개요

- 위치 : 9호선 마곡나루역과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사이
- 면적 : 12,979㎡(광장 및 지하공공보도시설 중복결정, '12.10)

구 분	지상1층	지하1층	지하2층
연 면 적	1,110.83㎡	10,317.43㎡	10,957.39㎡
주요시설	- 광장 - 자전거보관소(200대)	- 상가 14개(2,400㎡) - 지하공공보도, 연결보도 - 썬큰 광장	- 주차장(200대) - 기계·전기시설 - 지하공공보도
관리방식	- 광장 : 시설관리 용역	- 상가 : 통합운영사업자	- 주차장관리 : 시설관리용역

- 사업비 : 461억 원(공사비 450억원, 설계비 11억원)



조례안은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마곡광장 관리 및 운영(안 제3~4조), 사용신청·허가·제한 및 통지(안 제 5~7조),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정지(안 제8~9조), 이의신청 및 원상회복(안 제11~12조) 등임.

## □ 주요사안별 검토의견

### 가. 광장의 관리 및 위탁 운영(안 제3조 및 제4조)

- 마곡광장의 관리범위는 광장과 광장에 부속된 시설물임. 부속시설물인 상가와 주차장, 자전거보관소는 해당 조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되, 마곡광장 전체의 관리 및 운영을 관련법<sup>1)</sup> 및 조례<sup>2)</sup>에 따라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현재는 SH공사<sup>3)</sup>)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산업단지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관리업무를의 위탁)

시장은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위수탁 기간 : 2018.5.1.~2020.12.31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 위탁운영 : 서울주택도시공사(마곡산업단지관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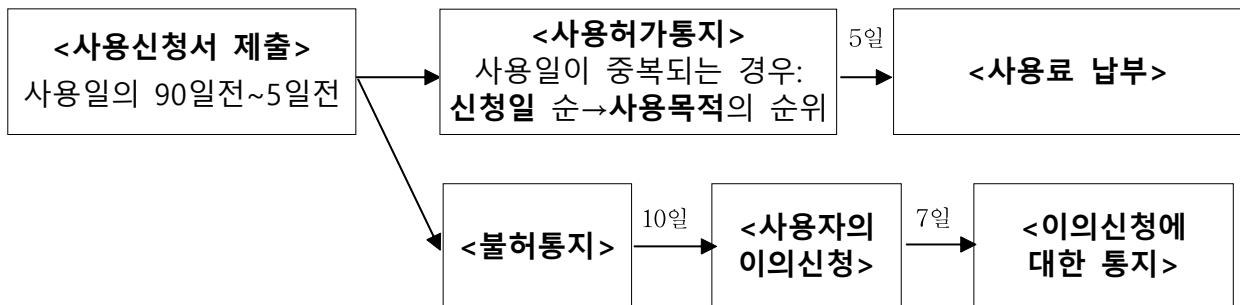
- 관리범위 : 마곡광장과 부속된 시설물(상가,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

※ 해당 법률 및 조례 등에 따라 관리 : 상가(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주차장(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자전거보관소(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사용허가기준(안 제5조 및 제6조) 및 사용료 징수(안 제11조)**

- 광장 사용신청은 사용일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신청일이 동일하고 우선순위끼리 경합할 경우, 마곡산업단지와 관련된 행사를 우선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우선순위 중복시에는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였음.

<광장사용 신청 절차>(안 제5조~제8조)



※ **동일한 사용일에 중복되는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 신청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순으로 우선 허가 가능

- ① 입주기업 지원 등 마곡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행사
- ② 마곡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③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④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 ⑤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노인 관련 행사

- 이는 마곡산업단지내 광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입주기업 등 마곡산업단지의 육성 등을 위해 제정하는 이 조례안의 취지에 따르려는 것으로 파악됨.
-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별표의 범위( $m^2$ /시간, 10~20원)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바, 광장사용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겠음.

#### 다. 혁신기술 지원(안 제13조)

-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등 혁신기술의 시범사업을 위해 광장 및 부속시설물 이용시 필요한 지원(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장소로 주차장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라. 종합

- 이 조례안은 서울식물원 개장('18.10.11 임시개장, '19.5.1 정식개장) 및 입주기업 증가 등으로 시민과 입주기업의 마곡광장 이용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마곡광장의 사용신청 절차, 허가 및 제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마곡산업단지 육성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참고로, 이 조례안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의 60일 전부터 제출하도록 한 광화문광장이나 청계천 광장과는 달리 신청기간이 가장 긴 서울광장과 동일한 사용일인 90일 전부터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sup>4)</sup>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혁신기술 관련 광장사용 시 부속시설물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있어 다른 광장 조례와 차이가 있음.

---

4) 이는 신청가능 시점을 충분히 두어 계획적인 장소 확보와 행사를 위해 시간제한으로 야기되는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례규칙 규제심의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임.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임경숙
연 락 처	02-2180-8205
이 메 일	kslinga@seoul.go.kr

## [참 고] 서울시 내 광장 개요

### 1. 서울광장 (2004년 조성)

- 위치 : 중구 태평로1가
- 면적 : 13,207㎡ (잔디 6,449㎡, 화강석 6,758㎡)
- 시설 : 분수대, 화단
- 특징 : 잔디광장 둘레에 48개의 조명등 설치
- 조례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2. 청계광장 (2005년 조성)

- 위치 : 종로구 서린동 148
- 면적 : 1,700㎡
- 시설 : 청계광장 소라탑, 다리 총22개, 분수 총 12개, 진입로 총 57개소
- 특징 : 청계천 발원지에 조성됨
- 조례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 3. 광화문광장 (2009년 조성)

- 위치 : 종로구 세종대로 172
- 면적 : 18,840㎡ (길이 555m, 너비 34m)
- 시설 : 분수,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 동상, 역사물길, 해치마당 등
- 특징 : 이순신장군동상 뒤편에 지상과 광화문역을 연결하여 해치마당이 조성
- 조례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4. 세운광장 (2017년 조성)

- 위치 : 종로구 장사동 116-3
- 면적 : 1,123㎡
- 시설 : 광장, 계단, 가로등배너
- 특징 : 종로에서부터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2층에 달는 경사광장
- 조례 :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